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2회 1차 정례회

# 검토 보고서

2023. 6. 14.(수)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아동청소년과)
- 제안일 : 2023. 5. 19.
- 회부일 : 2023. 5. 25. (의안번호 : 23-84)

## 2. 제안이유

- 청소년이용시설의 청소년우선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청소년 시설 중 독서실 사용료 상한에 대한 아동·청소년과 성인 간 차등 적용 및 인상(안 제7조 제1항 별표)
- 맞춤법에 따른 표현 정비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23. 4. 20. ~ 5. 10. (제출의견 2건 : 미반영)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청소년이용시설의 청소년우선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맞춤형에 따른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7조제1항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에 대한 별표에서는 독서실 사용료를 아동 청소년 및 성인 구분 없이 1회 사용료를 500원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성인 1회 사용료를 5,000원으로, 월간사용료를 110,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 같은 조 제목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제1항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같은 조 제2항 “사용료등을 납부”에서 “사용료 등을 납부”로 “사용료등을 반환”에서 “사용료 등을 반환”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 등”을 “사용료 등”으로 수정하는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활동 지원법」 제10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며, 사용료 등 결정은 2023년 제3차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자료

### 1. 관련법령

#### 청소년활동지원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공공성·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2. 마포구립 청소년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인력	개관 일	수용 인원	위탁 운영체	위탁 기간	운영내용
마포 청소년 문화의집	상암산로 1길67 (상암동)	대지1,463㎡ 연면적3,687㎡ 지하1/지상5	22명	2010. 2.1.	500명	(사) 한국 청소년 재단	22.04.01.~ 25.03.31.	청소년사업, 특화사업, 상담사업, 평생교육사업
도화 청소년 문화의집	도화2길77 (도화동)	대지358㎡ 연면적1,114㎡ 지하1/지상3	7명	2013. 11.1.	200명	(사) 한국 청소년 재단	22.04.01.~ 25.03.31.	청소년사업, 상담사업, 평생교육사업
망원 청소년 문화센터	월드컵로 25길 164 (망원동)	대지990㎡ 연면적974㎡ 지하1/지상3	9명	2014. 3.3.	210명	(사) 한국 청소년 지원 네트워 크	22.12.20.~ 25.12.19.	청소년사업, 상담사업, 평생교육사업
마포구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희우정로77 (망원동)	226.23㎡ 지하1층 (도로변 1층)	6명	2009. 4.30.	상담복지 기관	(사) 한국 청소년 지원 네트워 크	23.01.01.~ 24.12.31.	위기청소년 맞춤형복지서 비스, 상담, 찾아가는 학교지원 등
마포구 청소년 지원센터	희우정로77 (망원동)	226.23㎡ 지하1층 (도로변 1층)	3명	2015. 6.1.	상담복 지 기관	마포구청 소년상담 복지센터	21.01.01.~ 23.12.31.	학교밖 청소년 발굴, 상담,교육지원, 직업체험,자 립지원등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1.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 사용료	대 상	1 회 사용료	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관	어린이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31,200	
	초·중·고생	1,8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38,400	
	대학생, 성인	2,5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헬스장	고등이하	2,000	8,500	17,000	25,500	34,000	42,500	51,000	
	대학생, 성인	3,000	12,500	25,000	37,500	50,000	62,500	75,000	
독서실	아동청소년	500	11,000원 (월간 사용료)						
	성인	5,000	110,000 (월간 사용료)						
시설대관	200석 이내	25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						기본 3시간
	300석 이내	33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400석 이내	45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						
비고	<p>1. 체육관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p> <p>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사용료임</p> <p>3. 사용료 할증</p> <p>1) 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의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p> <p>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p> <p>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p>								

## 4.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공문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마포구



수신자 아동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2023년 제2차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1. 경제진흥과-22436(2023. 5. 2.)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제2차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심의일자: 2023. 5. 2.(화)

나. 심의방법: 서면 심의

다. 심의결과

연 번	부 서 명	안 건 명	심의 결과
1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시설 사용료 상한 일부 인상(안)	원안 의결

- 붙임 1. 2023년 제1차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결과 보고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경제진흥과장

★구두관

성환경제팀장

경제진흥과장

협조자

시행 경제진흥과-22499 ( 2023.05.02. ) 접수 아동청소년과-9172 ( 2023.05.03. )

우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2(성안동) /http://www.mapo.go.kr

전화 02)3153-8560 /전송 02)3153-8589 / chs30@mapo.go.kr / 비공개(6)